

경관심의 대상 (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, 경관심의 대상)

1.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(경관법 시행령 제18조, 파주시 경관조례 제22조)

구 분	대 상
도로· 철도시설· 도시철도시설	「도로법」, 「철도건설법」,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, 철도, 도시철도사업
하천시설	「하천법」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하천시설사업
공원	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. 단,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
도로 시설물	경간장 50m 이상·연장 100m 이상의 교량, 고가차도, 지하도, 육교, 연장길이 100m 이상의 터널·생태통로 등 도로시설물
도로부속 시설물	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L=50m이상, H=3m이상 석축 및 옹벽, 낙석 방지망, 방음벽,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물

2.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(경관법 시행령 제19조, [별표])

구 분	대 상
도시지역	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
도시지역 외의 지역	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
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	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

3. 건축물의 경관 심의(자문) (파주시 경관조례 제23조제1호, [별표])

구 분		대 상
공공건축물	심의	- 공공청사 -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사업하는 건축물(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). 다만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.
민간건축물	자문	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연면적 1,000㎡초과하는 공장 및 창고

☞ **파주시 중점경관관리구역** (※ 파주시 경관계획 2030 내용 참고)

중점경관관리구역 (19)	
산림경관(7)	감악산, 심학산 월룡산, 보현산, 박달산, 파평산, 학령산
수변경관(4)	임진강(한강) 수변경계 300m., 공릉천 수변경계 200m 문산천 수변경계 100~200m, 마장호수
역사문화경관(2)	통일동산, 삼릉
시가지 경관(2)	금촌시가지(중앙로 및 문화로 경계 30m) 문산시가지(문산로 경계 100m)
도로·철도 경관(4)	1번국도 국도변 경계 50m, 경의선 철도 경계 50m / 양측 500m 길이 서측우회도로 국도변 경계 50m, 56번국도 국도변 경계 50m

공공디자인 자문대상 (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관련 [별표])

1. 대중교통/보행안전/편의/공급/녹지/안내/도로/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(색채, 재질, 조형 등)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,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
가. 대중교통 정류소(버스·택시 승차대), 자전거 보관대, 주차 관련 시설물, 지하철 출입구, 환기구(흡·배기구), 교통량 검지기, (경)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
나.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,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, 보호 울타리, 가로등, 보행 유도등, 보안등, 공원등, 가드레일 등
다. 벤치(의자), 가로 판매대, 퍼걸러(서양식 정자), 쉼터(Shelter), 음수대, 환경미화원 대기소, 휴지통(재떨이 포함), 무인 정보단말기(키오스크), 공중전화, 정보제공 부스, 관광안내소,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
라. 맨홀, 소화전, 제설함 등 방재시설, 신호등 제어함, 분·배전함, 가로등 제어함, 상수도 제어함, 무선·휴대전화 기지국, 통신 안테나 등
마. 가로수 보호대(가로수 보호덮개 포함), 가로 화분대, 분수대, 배수구 덮개 등
바. 교통 표지판, 이정표, 지하철 노선도, 도로 및 건물/주차장/공공기관/자전거도로/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, 공원/관광/문화재 안내,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, 도로교통 표지, 디지털 영상매체, 지정 벽보판(광고판), 장애인 정보제공시설,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, 현수막 게시대 등
사. 교량(철교 포함), 고가차도(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), 입체교차로, 지하(차)도 (지상 돌출부 포함), 터널, 생태통로, 회전형 교차로 등
아. 보도 육교(엘리베이터 포함), 지하보도, 방음벽(시설), 방호 울타리, 중앙 분리대, 낙석 방지망, (높이 2m 이상의) 석축 및 옹벽 등
자. 차도, 보도, 자전거도로, 교차로, 공개·전면공지, 어린이(노인)보호구역, 속도저감시설, 횡단보도, 교통섬, 걷고 싶은 거리, 등산로, 산책로, 문화예술거리 등
차. 공사용 출입구, 공사 안내판, 임시 가림벽 등
2.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(색채, 재질, 조형 등)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,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
가. 환경조형물
나. 상징조형물(동상, 기념비 포함)

- 다. 벽화
- 라. 슈퍼그래픽
- 마. 미디어아트 등

3. 공원, 휴양 공간,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(색채, 재질, 조형 등)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,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

가. 자연공원, 도시공원, 어린이공원, 썸지공원, 수변공원, 체육공원 등

나. 휴양림, 수목원, 식물원, 생태원, 저류지,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, 하천·수변 공간, 가로 공간 등

다. 광장, 공공건축물 부설광장, 분수광장 등

4. 공공청사, 문화/복지시설, 교통시설,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(색채, 재질, 조형),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,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

가. 공공기관 청사, 주민센터, 공공교육·연수시설, 소방서 등

나. 박물관, 미술관, 복지시설(노유자시설 포함), 도서관, 의료시설, 체육관·경기장, 공연·전시장, 홍보·기념관, 청소년수련시설 등

다. 관제센터, 터미널, 요금소, 공영주차장 등

라. 상하수도시설, 쓰레기 소각장, 재활용 선별장, 음식물처리시설, 공중화장실 등

5. 안전, 위생, 복지, 편의,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(색채, 재질, 조형),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,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

가. 안전장비, 피난장비, 구호장비, 교통차단장비 등

나. 공중위생장비, 방역장비 등

다. 장애인용품, 공공 영유아 용품 등

라. 실내용 가구, 사무용품, 행사용품, 정보 안내용품 등

마. 기념품, 공공공예품 등

6. 파주시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

가.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[정보체계, 그림문자(픽토그램), 지도, 서체 등]

나.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[단체 상징(CI), 브랜드 상징(BI), 캐릭터, 고유 문양(엠블럼), 서체 등]